



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범위 확대 및 유의사항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일부개정으로 '18. 1. 1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범위가 대중교통·자가용·자전거·도보 등 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확대되어 적용됩니다. 이와 관련한 주요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1 개정 배경

- '16. 9. 29. 헌법재판소는 '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'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규정에 대해 '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'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
- 이에, 여야 및 정부 논의를 거쳐 '17. 9. 28.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

2 주요 개정 내용

○ 보상범위 확대

- 기존 보상범위였던 '사업주 지배관리 내 출퇴근 중 사고(통근버스 등)'뿐 아니라, 대중교통·자가용·자전거·도보 등 '통상적인 경로와 방법'(아래 참조)으로 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확대

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(서울행법 2006구합7058, 2006. 6. 14. 선고) 〉

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, 즉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고, 그 중 '통상적 경로'는 소요시간,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해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서,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포함되며, 반드시 최단 코스를 의미하지는 않음

○ 적용제외 사유

-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**일탈*** 또는 **중단****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음
 - * 출퇴근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(퇴근하는 경로를 벗어나 음주를 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 등)
 - ** 출퇴근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 (출퇴근 경로 상에서 일정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공연관람을 하는 경우 등)
- 다만, 일탈·중단 사유가 병원진료, 식료품 구입 등 일상생활 필요행위인 경우는 보상

○ 적용제외 직종

-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중 **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***에 대하여 적용제외

- * 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
(예시) 동고동락 행복버스 : 오지, 산골 등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마을 주민들이 지역 내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부르듯 버스를 전화로 요청하는 것(논산시 시행)
- ②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
- ③ 택배원(퀵서비스 기사)에 해당하는 사람

○ 자동차보험과의 관계

-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재해자는 **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 가능**
-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구상금 조정을 위해 **‘구상금 협의·조정기구’ 구성·운영 예정**

3 유의사항

- 자동차로 출퇴근 중 재해발생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유리한 보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

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】

구분	산재보험	자동차보험	비고
지급항목	요양급여, 휴업급여, 간병급여, 직업재활급여, 장애급여, 상병보상연금, 유족급여, 장의비	요양급여, 부상보험금, 장애보험금, 사망보험금, 장례비, 위자료	산재보험에는 휴업급여, 간병급여, 상병보상연금이 더 있음
과실상계	무과실주의(과실상계 없음)	과실주의(과실상계 있음)	
위자료	위자료 지급항목 없음	위자료 지급항목 있음	위자료는 자동차보험에만 있고 구상대상이 아님
지급방법	연금/일시금 지급제도 모두 있음 (유족급여는 둘 중 선택, 장애급여는 7급 이상만 연금가능)	일시금 지급제도만 있음	유족/장애연금 모두 사망 시 까지 지급됨

○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보험처리의 경우 산재보험료 할증여부

- 출퇴근재해의 경우 **개별실적요율**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

○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은 없는 지 검토

-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**재요양제도, 후유증상제도, 연금제도**가 있음
-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더라도 **자동차보험의 대물, 위자료, 자기신체사고**는 산재보험과 중복되지 않아 이증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**자동차보험금 신청이 가능**

서체 파일 저작권으로 머리 아픈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하여 '중소기업 전용서체' 탄생!

중소기업중앙회는 더 가까운 곳에서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 한마음체(고딕·명조)를 배포합니다. 저작권 고민 없이! 광고, 상표, 인쇄물, 현수막,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다운로드 및 라이선스 확인 www.kbiz.or.kr